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8회 임시회(2021. 4.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목 차

| | | |
|-----|-------------|---|
| I | 제안 개요 | 1 |
| II | 세입·세출 예산 총괄 | 2 |
| | ① 총괄 현황 | 2 |
| | ② 세입 편성 | 2 |
| | ③ 세출 편성 | 2 |
| III | 일반회계 | 3 |
| | ① 세입 예산 | 3 |
| | ② 세출 예산 | 3 |
| IV | 검토 의견[종합] | 7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제안 개요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4. 5.(월), 마포구청장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1. 4. 16.(금) ~ 4. 19.(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21. 4. 19.(월)

- 위원회 회부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2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II 세입·세출 예산 총괄

1 총괄 현황

(단위: 천 원)

|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액 | 증감액 | 비 고 |
|-------------|-------------|-------------|-----------|-------|
| 합 계 | 760,480,230 | 753,451,230 | 7,029,000 | 0.93% |
| 일 반 회 계 | 676,169,937 | 669,140,937 | 7,029,000 | 1.05% |
| 특 별 회 계 | 84,310,293 | 84,310,293 | 0 | 0% |
| 의 료 급 여 | 485,200 | 485,200 | 0 | 0% |
| 마 포 농 수 산 물 | 7,503,649 | 7,503,649 | 0 | 0% |
| 주 차 장 | 68,493,979 | 68,493,979 | 0 | 0% |
| 발 전 소 주 변 | 6,577,465 | 6,577,465 | 0 | 0% |
| 지 역 지 원 사 업 | | | | |
| 건 축 안 전 | 1,250,000 | 1,250,000 | 0 | 0%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2,900만 원(0.93%)이 증가한 7,604억 8,023만 원임.
- ▶ 일반회계: 6,761억 6,993만 7천 원(70억 2,900만 원 증가)
 - ▶ 특별회계: 843억 1,029만 3천 원(변동 없음)

2 세입 편성

(단위: 천 원)

| 구 분 | 순세계잉여금 | 비 고 |
|---------|-----------|------------------------------------|
| 일 반 회 계 | 7,029,000 |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활용 |

※ 특별회계 세입 편성: 해당 없음

3 세출 편성

(단위: 천 원)

| 구 분 | 합 계 | 자체사업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비 고 |
|---------|-----------|-----------|-------------|-----|
| 일 반 회 계 | 7,029,000 | 6,134,950 | 894,050 | |

※ 특별회계 세출 편성: 해당 없음

Ⅲ 일반회계

1 세입 예산

(단위: 천 원)

|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액 | 증감액 | 비 고 |
|---------|------------|------------|-----------|--------|
| 일 반 회 계 | 52,629,000 | 52,629,000 | 7,029,000 | 순세계잉여금 |

2 세출 예산

(단위: 천 원)

|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액 | 증감액 | 비 고 |
|---------|-------------|-------------|-----------|-----|
| 일 반 회 계 | 676,169,937 | 669,140,937 | 7,029,000 | |

(1) 국별 세출현황

(단위: 천 원)

| 구 분 | 예산액 | | 기정액 | | 증(△)감 | 증감률 |
|-------------|-------------|--------|-------------|--------|-----------|-------|
| | 예산액 | 구성비 | 기정액 | 구성비 | | |
| 총 계 | 676,169,937 | 100% | 669,140,937 | 100% | 7,029,000 | 1.05% |
| 감 사 담 당 관 | 161,752 | 0.02% | 161,752 | 0.02% | 0 | 0% |
| 마포1번가연구단 | 1,120,228 | 0.17% | 1,120,228 | 0.17% | 0 | 0% |
| 행 정 관 리 국 | 182,669,684 | 27.02% | 182,669,684 | 27.30% | 0 | 0% |
| 기 획 재 정 국 | 11,186,756 | 1.65% | 10,292,706 | 1.54% | 894,050 | 8.69% |
| 관 광 일 자 리 국 | 54,762,924 | 8.10% | 52,361,124 | 7.83% | 2,401,800 | 4.59% |
| 복 지 교 육 국 | 362,781,856 | 53.65% | 359,048,706 | 53.66% | 3,733,150 | 1.04% |
| 도 시 환 경 국 | 20,884,479 | 3.09% | 20,884,479 | 3.12% | 0 | 0% |
| 교 통 건 설 국 | 17,153,102 | 2.54% | 17,153,102 | 2.56% | 0 | 0% |
| 보 건 소 | 20,841,808 | 3.08% | 20,841,808 | 3.11% | 0 | 0% |
| 구 의 회 | 4,607,348 | 0.68% | 4,607,348 | 0.69% | 0 | 0% |

(2) 성질별 세출현황

(단위: 천 원)

| 구 분 | 예산액 | | 기정액 | | 증(△)감 | 증감률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
| 총 계 | 676,169,937 | 100% | 669,140,937 | 100% | 7,029,000 | 1.05% |
| 인 건 비 | 110,144,782 | 16.29% | 110,129,782 | 16.46% | 15,000 | 0.01% |
| 물 건 비 | 48,348,809 | 7.15% | 48,287,859 | 7.22% | 60,950 | 0.13% |
| 경 상 이 전 | 448,625,780 | 66.35% | 443,466,780 | 66.27% | 5,159,000 | 1.16% |
| 자 본 지 출 | 58,702,434 | 8.68% | 58,702,434 | 8.77% | 0 | 0% |
| 내 부 거 래 | 3,617,919 | 0.54% | 2,717,919 | 0.41% | 900,000 | 33.11% |
| 예비비및기타 | 6,730,213 | 1.00% | 5,836,163 | 0.87% | 894,050 | 15.32% |

(3)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천 원)

| 구 분 | 예산액 | | 기정액 | | 증(△)감 | 증감률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
| 총 계 | 676,169,937 | 100% | 669,140,937 | 100% | 7,029,000 | 1.05% |
| 일반공공행정 | 28,273,994 | 4.18% | 28,273,994 | 4.23% | 0 | 0% |
| 공공질서및안전 | 4,406,400 | 0.65% | 4,406,400 | 0.66% | 0 | 0% |
| 교 육 | 12,469,487 | 1.84% | 12,469,487 | 1.86% | 0 | 0% |
| 문 화 및 관 광 | 45,386,387 | 6.71% | 45,386,387 | 6.78% | 0 | 0% |
| 환 경 | 43,420,942 | 6.42% | 43,420,942 | 6.49% | 0 | 0% |
| 사 회 복 지 | 356,081,249 | 52.66% | 352,348,099 | 52.66% | 3,733,150 | 1.06% |
| 보 건 | 17,986,914 | 2.66% | 17,986,914 | 2.69% | 0 | 0% |
| 농림해양수산 | 1,675,114 | 0.25% | 1,675,114 | 0.25% | 0 | 0% |
| 산업·중소기업 | 7,248,127 | 1.07% | 4,846,327 | 0.72% | 2,401,800 | 49.56% |
| 교 통 및 물 류 | 6,999,776 | 1.04% | 6,999,776 | 1.05% | 0 | 0% |
| 국토및지역개발 | 16,750,857 | 2.48% | 16,750,857 | 2.50% | 0 | 0% |
| 예 비 비 | 6,730,213 | 1.00% | 5,836,163 | 0.87% | 894,050 | 15.32% |
| 기 타 | 128,740,477 | 19.04% | 128,740,477 | 19.24% | 0 | 0% |

(4)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현황

기 획 재 정 국

○ 세출예산액은 111억 8,675만 6천 원(기정액 대비 8.69%인 8억 9,405만 원 증액)

(단위: 천 원)

|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액 | 증 감 | 증감률 |
|------------|------------|------------|---------|--------|
| 합 계 | 11,186,756 | 10,292,706 | 894,050 | 8.69% |
| 기 획 예 산 과 | 8,562,100 | 7,668,050 | 894,050 | 11.66%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894,050 | 0 | 894,050 | 순증 |

○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세출편성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고 극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임.

관 광 일 자 리 국

○ 세출예산액은 547억 6,292만 4천 원(기정액 대비 4.59%인 24억 180만 원 증액)

(단위: 천 원)

|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액 | 증 감 | 증감률 |
|----------------|------------|------------|-----------|--------|
| 합 계 | 54,762,924 | 52,361,124 | 2,401,800 | 4.59% |
| 지 역 경 제 과 | 7,731,516 | 5,329,716 | 2,401,800 | 45.06% |
|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 | 500,000 | 0 | 500,000 | 순증 |
|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 1,001,800 | 0 | 1,001,800 | 순증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 1,400,000 | 500,000 | 900,000 | 180% |

○ 검토의견

- 관광일자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 19 재난의 장기화로 인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용자 지원과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요인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편성 내용을 보면, 기금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재난 지원금 성격의 예산 10억 180만 원, 그리고 이들의 영업운영 자금 용자금의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의 전출금 9억 원임.
- 금번 예산편성의 특징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폐업 또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련 조례¹⁾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매출감소에 따라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 대한 재기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복 지 교 육 국

○ 세출예산액은 3,627억 8,185만 6천 원(기정액 대비 1.04%인 37억 3,315만 원 증액)

(단위: 천 원)

| 구 분 | 추경예산액 | 기정액 | 증 감 | 증감률 |
|----------------|-------------|-------------|-----------|--------|
| 합 계 | 362,781,856 | 359,048,706 | 3,733,150 | 1.04% |
| 아 동 청 년 과 | 29,756,191 | 26,023,041 | 3,733,150 | 14.35% |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 3,733,150 | 0 | 3,733,150 | 순증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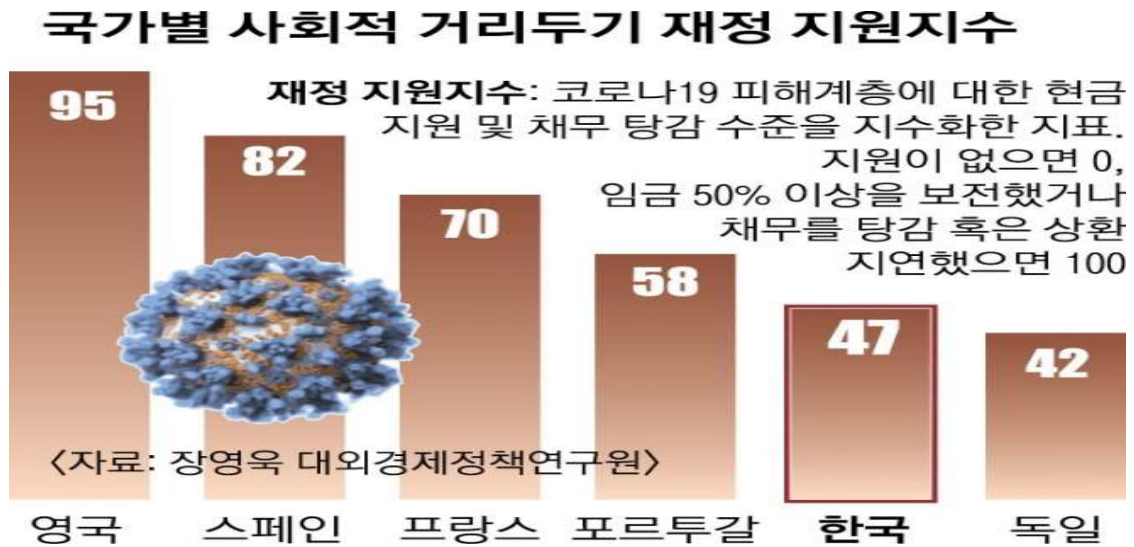
○ 검토의견

- 복지교육국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1건으로, 37억 3,315만 원을 증액하였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업 또는 미취업한 청년층에게 취업장려금(구직활동비)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부 편성항목을 살펴보면 관리인력 인건비 1,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 및 관리비용 5,915만 원, 취업장려금 36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IV 검토 의견(종합)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
-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 19로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청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취업 장려 활동비 및 긴급 피해 지원금을 집행하고자 관련사업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
-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며, 편성 목적이나 집행시기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 다만, 지원금 등의 금액을 보면 피해에 따른 보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19

피해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 채무 탕감 수준을 지수화한 주요국의 재정지원지수를 살펴보면 영국 95, 스페인 82, 벨기에 76, 프랑스 70 등인 반면 **한국은 47**에 그치고 있으므로, 감염병 재난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손실보상 등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임.²⁾



- 아울러, 악화되고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경비를 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보험 등 장기적으로는 민간 재원의 활용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2021. 2. 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주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